#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1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 김문수ㆍ이수진ㆍ이재강

양부남 • 박해철 • 이용우

이재관 • 문금주 • 조계원

양문석 • 위성곤 • 민형배

백승아 • 박지원 • 이광희

문대림 의원(16인)

### 제안이유

헌법 제7조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일체 금지하거나 통제한다는 신분상의 제한이 아니라 '직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을 유지하는 직무상의 의무를 의미함.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 2015년과 2016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적용위원회 등은 대 한민국 정부에 대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또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권고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지위에서 행한 정치적 활동과 정치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해 공무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과도한 정치적 기본권 제약 사항을 개선해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함.

## 주요내용

- 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제1항).
- 나.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하도록 한 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53조제1항).
- 다. 공무원 등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0조제1항 본문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3호)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2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

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公務員 기타 政治的 中立을 지켜야 하는 者(機關·團體를 포함한다)는"을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 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있어서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의6제1항 본문 중 "제60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60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거운동"을 "선거운동(제4호 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 는 선거운동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제85조제2항 후단 중 "그 所屬職員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을 "그 소속직원이나"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을 "선박의 선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敎育 기타명목여하를 불문하고"를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로 한다.

제8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41조제3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기관을 포함한다]가"를 "지방자치단체가"로 한다.

제147조제9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66조제1항제1호 중 "직(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을 "직"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第9條(公務員의 中立義務 등) ① 公務員 기타 政治的 中立을 지켜야 하는 者(機關・團體를 포함한다)는 選擧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選擧結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략)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選擧와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 國會議員이 그 職을 가지고 立候補하는 경우와地方議會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이 그 職을 가지고 立候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9條(公務員의 中立義務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_\_\_\_\_

다만,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 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있어서 지방의회의원 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 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第2條(公 <삭 제> 務員의 구분)에 規定된 國家 公務員과 「지방공무원법」 第2條(公務員의 區分)에 規定 된 地方公務員. 다만, 「정당 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 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政務職公 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各級選擧管理委員會委員 또 | <삭 제> 는 敎育委員會의 敎育委員

- 3.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의 身分을 가진 者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제1항제3호에 해 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 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 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 <삭 제> 업협동조합법」 • 「산림조합 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常勤 任員과 이들 組合의 中

<삭 제>

<u><삭 제></u>

央會長

- 6. 「지방공기업법」 第2條(適 📗 用範圍)에 規定된 地方公社와 地方公團의 常勤 任員
-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 | <삭 제> 호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없는 私立學校 敎員

8. • 9. (생략)

② ~ ⑤ (생 략)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 운동 금지) ①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제60조제1항제5호의 경우 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 단의 상근직원은 제외한다)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 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자) ① -----

<삭 제>

8	}. •	9.	(현	행3	라	같음	-)			
(2	2	~	5	(현	[행]	라 >	같음	-)		
제5	73	돈의	6(-	공무	-원	등	의	당니	경	선
1	<u> </u>	5	금ス	([	1					
_										
_				<u>z</u>	1160	조지	112	항제4	4호	부
E		제(	)호	까고	이에	해	당さ	하는	사	람
_										
_										
_										
_										
_										
_										
_										

② (현행과 같음)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 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3. (생략)
- 4. 「국가공무원법」 第2條(公務員의 구분)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 「지방공무원법」 第2條(公務員의 구분)에 規定된 地方公務員.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u>선거운</u>
동(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
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지
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
<u>을 말한다)</u>
1. ~ 3. (현행과 같음)
4
<u>다만, 대통령,</u>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
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
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
서관 • 비서관 • 비서 • 행정보
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
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
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
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
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
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

- 5. 第53條(公務員 등의 立候補)第1項第2號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者(제5호 및 제6호의경우에는 그 常勤職員을 포함한다)
- 6. ~ 9. (생략)
- ② (생략)
- 第85條(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第 금지) ① (생 략)
  - ② 公務員은 그 地位를 이용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이경우 公務員이 그 所屬職員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任・職員을 대상으로 한選擧運動은 그 地位를 이용하여하는 選擧運動으로 본다.
  - ③ ④ (생 략)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 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公務 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

선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 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삭 제>

- 6. ~ 9.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第85條(공무원 등	·의 선	거관여	등
금지) ① (현행	과 같	음)	
		·	
	1 소	속직원이	나
		. – – – – –	
		. – – – – –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	

員(國會議員과 그 보좌관・선 임비서관・비서관 및 地方議會 議員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 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 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ㆍ리 • 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 부,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 民運動團體 呈 対 國家 中 地方自 治團體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 는 團體(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 ・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 總聯盟을 말한다)의 常勤 任・ 職員 및 이들 團體 등(市・道 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 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所屬職員 또는 選擧區民에게 <u>教育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u> 특정 政黨이나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

선박의 선장
 -
1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
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 다)의 業績을 弘報하는 행위 2. ~ 7. (생 략) ② ~ ⑦ (생 략)
-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
  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
  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
  - 1. (생략)
  -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 정된 기관・단체
  - 3. ~ 8. (생략)

동을 할 수 없다.

- ② (생 략)
- 第141條(黨員集會의 제한) ①·② (생 략)
  - ③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 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또는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
1.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3.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141條(黨員集會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 바 기 키 다 케 기.
<u>지방자치단체가</u>

제6호에 규정된 기관을 포함한 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 민회관·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집회의 장소로써 무료로 사용할 수 있 다. 이 경우 시설의 손괴 또는 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 을 끼친 때에는 당해 정당이 보상하여야 한다.

- ④ ~ ⑥ (생 략)
- 第147條(投票所의 設置) ① ~ ⑧ (생 략)
  - ⑨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직원5. (생 략)
  - ①·① (생 략)
- 第266條(選擧犯罪로 인한 公務擔 任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

④ ~ ⑥ (현행과 같음)
第147條(投票所의 設置) ① ~ ⑧
(현행과 같음)
9
1. ~ 3.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5. (현행과 같음)
(D·1D (현행과 같음)
第266條(選擧犯罪로 인한 公務擔
任 등의 제한) ①

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 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 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 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 함으로 인하여 懲役刑의 宣告 를 받은 者는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免除 된 후 10年間,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刑이 확 정된 후 10年間, 100萬원이상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刑이 확정된 후 5年間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職 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 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 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 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직(제53조제</u> 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 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 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1
<u>직</u>

#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 5. (생 략)

②・③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